

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2.12.15.(목)		
담당부서	법무실	책임자	국 장	황승기	(02-3145-5910)
	은행팀	담당자	팀 장	정은정	(02-3145-5912)
	일반은행검사국	책임자	국 장	양진호	(02-3145-7050)
	검사기획팀	담당자	팀 장	송영두	(02-3145-7060)

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

- □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, 손태승 前 은행장 외 1명이 우리 은행의 DLF 파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
 - **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**함으로써 **원고**(손태승 前 은행장 등) 승소 파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
- □ 금융감독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,상 "내부통제기준 설정 · 운영기준"의 규범력이 인정*되었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,
 - *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1조제1항 [별표2]의 "내부통제기준 설정· 운영기준"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
 - o 향후 **대법워 판결** 내용을 잣대로 **금융위 등**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